

한국장로교회 초기 직분론 고찰: 1891년~1934년까지의 헌법 변천을 중심으로

임종구

(대신대, 조교수, 역사신학)

- I. 들어가며
- II. 한국장로교회의 형성과정
- III.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
- IV.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 분석
- V. 한국장로교회 직분론에 대한 제안
- VI. 나오면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을 살펴보고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추적하면 선교사들의 한국도착 순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국북장로교회선교회 규범과 세칙(1891)으로부터 선교사공의회, 합동 공의회, 조선독노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찰스 하지 교회 정치문답조례(1917), 1922년 헌법, 1929년 헌법, 1934년 헌법까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론을 9개의 분류로 나누고 그 특징과 영향,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장로교회는 초기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북장로교회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북장로교회가 각국 선교부를 포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직분론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특히 목사직에 대한 이해와 진술에 있어 현장과 헌법은 상이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장로교회에 제출하는 제안은 항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의 3종으로 설명하고 목사직과 장로직의 차이점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또한 서리제도와 원로제도, 명예제도를 정비하고 여성사역자에 대한 범위와 권한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1922년의 헌법에 관여한 곽안련은 찰스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따르지 않고 미국남장로교회의 헌법을 도입함으로써 미국북장로교회가 이미 현장에 적용했던 헌법과 상이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장로교회헌법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분석과 성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장로교회, 직분론, 곽안련, 찰스하지, 미북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

논문투고일 2022.07.14. / 심사완료일 2022.08.31. / 게재확정일 2022.09.07.

1. 들어가며

선교 137년(1885-2022)의 시점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 명암만큼이나 극단적이다. 눈부신 교회 성장과 선교의 열정에 비하면 대사회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겠지만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일탈과 교직이 가볍게 취급되는 직분론의 이해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다양하지만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는 교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령 감리교회의 권사제도나, 오순절교회의 구역제도의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수용하고 있다. 또 장로교회의 직분인 장로의 경우 감리교회, 회중교회, 조합교회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직분론에 있어서는 교파의 신학적 특성을 넘어서서 타 교파의 교직제도를 무난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에서 국가교회가 발전하고, 북미에서는 회중교회가 발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발전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활약에서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탄탄한 교회론을 가진 장로교회가 불안한 조선인들에게 안정적인 조직으로 비춰지고 예상되는 선교지에서의 혼란과 무질서, 미숙함을 정돈하면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조직으로 장로교회의 직분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이 직분론이 발전한 한국장로교회는 상황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 입국하여 선교의 주도권을 가졌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초기부터 네비우스를 초청해 선교지의 상황에 맞는 선교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서리직분제도의 도입이었다.¹ 또한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분론적 제약을 제거한 것과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조직하는 일을 미루면서까지 까다롭게 세웠다는 점이다. 또 미국 남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와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하고 독노회와

1 황재범,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의 설립 과정 및 그 의의에 대한 연구”,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성립과정 및 신학』 황재범 외 (서울:한들출판사, 2010), 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세우기까지 공교회적인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로교회 헌법과 직분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1970년과 1980년대의 연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만한 연구로는 전호진의 “장로 직분론”²과 김선근의 “장로교 직분론”³, 1933년 허순길의 “개혁주의 교회정치사에서 본 장로직”⁴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현대에 와서는 성희찬의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⁵가 주목받을 만한 연구로 언급될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을 살펴보고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정에서 나타난 신학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초창기 장로교회의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및 직분론을 중심으로 살펴서 현재의 헌법과 정치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밝히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직분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한국장로교회의 형성과정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는 인도이다. 한국은 인도보다 180년 늦게, 중국보다는 80년, 일본보다는 30년 늦게 복음이 들어왔다.⁶ 한국선교는 1884년 알렌(Horace N.Allen, 安諭, 1858-1932)과 1885년의 언더우드(Hotece Ge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를 출발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장로교회의 출발은 조선독노회가 조직된 1907년을 기점으로 할 수

2 전호진, “장로직분론”, 『교회문제연구』제2집(1981)

3 김선근, “장로교 직분론”, 『고려신학대학 논문집』제6집(1978)

4 허순길, “개혁주의 교회정치사에서 본 장로직”, 『고려신학대학 논문집』제2집(1933)

5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서울:생명의 양식, 2021)

6 유럽개신교가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것을 18세기 말부터인데 1706년 독일의 지겐발크(Bartholomaeus Ziegenbalg)가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다시 100년 후 1807년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중국을, 그리고 약 50년 후 1859년에 6명의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입국했다.

있는데⁷ 19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으로 더 알려져 있다.⁸

한국장로교회는 초창기부터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가 함께 선교활동을 펼쳤다. 가장 먼저 선교부를 꾸린 것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였다. 1884년 의사 알렌이 도착하였고, 곧 이어 언더우드가 최초의 목사선교사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의사 헤론을 포함하여 5명이 한국에서 첫 선교부를 조직하고 서울, 청주, 안동, 대구, 재령, 평양, 선천, 강계등 8지역에 상주하게 되었다.⁹ 미국 남장로교회는 언더우드가 1891년 휴가차 미국에 갔을 때 윤치호와 더불어 한국선교를 소개하였고, 언더우드와 친구들, 그의 가족들이 5천 달러의 선교기금을 내놓으면서 이늘서등이 1982년에 입국하여 충청남도과 전라도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1893년 북장로교회 선교사들과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하였다.¹⁰ 호주장로교회는 1889년 데이비스가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가 한국에 도착했지만 천연두와 결핵으로 죽게 되고 데이비스의 희생이 동기가 되어 1891년 맥키 부부등 세 가정의 입국하였다.¹¹ 또한 캐나다 장로교회는 1898년 게일(J. S. Gale, 奇一)이 내한하였고,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에비슨(O. R. Avison, 魚丕信)이 내한하여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하였다.¹²

이렇게 각국의 장로교회는 선교회 공의회시대를 지나 독노회와 조선총회로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형성기에 각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선교역사를 살펴보면 각 교파, 교단이 ‘교계예양(敎界禮讓)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할당하여 선교함으로써 해당 선교부의 신학적 정체성이 그 지역의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교계예양협정’은 선교사 공의회를 통해 선교지 분할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양보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태도는 미국 남장로교회가 초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선교하기로 합의되었다가 후에 전라도에서만 사역하는 것으로 바뀌고, 캐나다 장로교회

7 황재범,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의 설립 과정 및 그 의의에 대한 연구”, 5.

8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15.

9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이교남역 (조선야소교서회, 1918), 14.

10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16.

11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17.

12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17.

는 원산과 동해안지역을, 호주장로교회는 부산과 경남 전역을 넘겨받게 된다.¹³

이런 각기 다른 신학의 정체성을 지난 해외 선교부가 한국교회의 초기 정치에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헌법, 정치, 직분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부산과 경남은 호주장로교회가, 전라도는 미국남장로교회가, 황해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서울과 평양, 영남은 미국북장로교회가 맡게 되고 향후 교단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교단의 분열과 합병의 과정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이 바로 직분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계예약협정을 통해 하나의 장로교회를 목표로했지만 이미 형성되어져 입국한 각국 장로교회의 직분관은 교단분열에서 일차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가령, 여성임직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¹⁴

III.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추적하면 선교사들의 한국 도착 순서와도 관련이 있는데(1)미국 북장로교회선교회 규범과 세칙(1891)을 최초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다시 조직된 (2)선교사 공의회시대로 4개의 장로회 선교부(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자유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활동하였다. 다음은 (3)합동 공의회 시대로 이 기간에는 한국인 대표자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회의록도 영어와 한글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4)조선독노회시대, (5)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시대, (6)찰스 하지, 교회정치 문답조례(1917), (7)1922년 헌법, (8)1929년 헌법, (9)1934년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론을 9개의 분류로 나누고 그 특징과 영향,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3 오주철,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황재범 외, 『초기 한국장로교회사-총회 설립 1912을 전후하여』(서울:한국출판사, 1912), 67.

14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김재준의 제명으로 교단분열이 일어나지만 곧 이어 1955년 41회 총회에서 여자 장로제도를 시작한다. 또 예장 통합은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목사인수를 결정하였다. 김순권, 『총회 회의록 제79회』(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15,127.

15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16-65.

1. 미국북장로교회선교회 규범과 세칙¹⁶(1891)

1891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중국선교사 네비우스(John L. Nevius)를 초청하여 선교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1891년에 7조 59항의 『북장로교회 선교회 규범과 세칙』(*Presbyterian Northern Mission Rules and By-Laws*, 1891)을 채택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한국장로교회의 최초의 직분론을 규정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 규범과 세칙의 특징은 25년간 중국 선교사로 활동한 네비우스의 선교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령 영수를 세운다든가 현지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선교 초기에 아직 조직교회를 이루지 못한 미약한 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수는 교역자, 즉 조사가 없을 경우 영수를 임명하여 주일예배를 주관하게 하되 사례금은 받지 않는 제도였고, 목사보다 앞에 언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지 대리인에는 영수, 장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사, 목사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항목에서는 매서인과 서리집사가 등장한다.¹⁸

미국 북장로교회의 규범과 세칙은 선교지 초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수, 조사, 매서인, 서리집사, 전도부인이 그 활용에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직분 세우는 것을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게 규정했다. 장로와 집사의 경우 만장일치로 선출되고도 선교지부의 승인을 받고, 또 6개월의 교육을 거쳐서 비로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선교초기의 상황을 벗어난 후에 영수와 전도부인, 매서인은 사라진 반면 서리집사는 그대로 존속하였다.¹⁹

16 한국교회사를 연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자료에 있다. 연구자는 곽안련이 1930년에 쓴 C. A.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of Korea*(New York, Chicago:Flemming H, 1930)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99-109.

17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16.

18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18.

19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19.

2. 선교사 공의회 의 직분론 규정(1893-1900)²⁰

장로회 공의회는 1893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한 후에 중단되었던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된 것이다. 이 공의회는 1983년에 조직되어 1907년 조선독노회를 통해 한국인 목사를 장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공의회 역시 1893년에서 1900년까지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장로회 선교 공의회와 한국인 대표자들과 함께 모여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1901년에서 1906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활발히 조직되고 수적으로 성장하던 때였다. 1900년에 공의회가 관할하는 교회는 조직교회 2개소, 미조직교회는 287개소에 이르렀고, 교회의 지도자, 즉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²¹ 당시 가장 먼저 선교기지를 세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1898년에 네비우스 사업방식을 별도의 세칙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한국장로교회 초기 직분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장로교회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은 종신의 직분인데 이 직분을 세우기에 아직 선교지 교회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서리직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목사의 서리로서 조사를, 장로의 서리로서 영수를, 집사의 서리로서 서리집사를 두게 된 것이다. 특히 전도부인, 권사, 여조사등의 여성사역자들이 선교사의 감독하에 사례금을 받고서 사역하였다.²²

결국 한국장로교회 직분론의 기초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네비우스선교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임시적 직분 시스템이 향후 한국교회 직분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중심의 직분론은 미국

20 한국선교 초기 공의회를 제1기와 제2기로 분류, 제1기를 선교사 공의회 시대, 제2기를 합동공의회 시대로 분류한 것은 왕길지등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스 7 편집위원들에 의해 1928년에 출간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하』의 분류와 명칭이다. 왕길지 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교남역,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60.

21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21.

22 1900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 교인 9364명, 세례교인 3710명, 장로 2명, 남자조사 28명, 남자 설교자 15명, 여자 설교자 8명이었다.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23.

남장로교회 선교부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의 신학과 직분론과 충돌하면서 절충적인 직분론을 낳게 된다. 캐나다 선교부는 여성직분과 관련해서²³ 미국 남장로교회는 향존직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²⁴. 뿐만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경우 감리교회와의 활발한 연합사업으로 직분론에 영향을 주고 받았다.²⁵

3. 합동 공의회의 직분론 규정(1901-1906)

이 기간의 공의회는 선교사와 조선인 총대들이 함께 참석하여, 회무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회의록은 영어와 한글로 작성되었다.²⁶ 회의록의 명칭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선교사와 조선인 총대 합(合) 성공의회(成公議會)이다.²⁷ 그러나 조선인 총대들이 교회일에 익숙치 못하고 또 조선인 목사가 없고, 장로의 수는 희소하고 치리권은 영어로 진행되는 의사회에 있어, 조선어를 사용하는 회의에는 총대의 친목과 교회 일을 처리하는 규칙 등에 대하여 실습하고 토론하는 형편에 있었다.²⁸

서문(序文)²⁹

- 23** 캐나다선교부가 활동한 황해도 지역의 함남노회는 1930년대에 여성들이 치리권에 참여하기를 청원하였다. 제22회 총회에 함남노회 최영혜외 103인이 여자장로자격에 관한 헌의를 상정한 것이다. 이것은 캐나다선교부의 직분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진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2회 회록』, 4.
- 24** 향존직을 2종으로 보고 목사와 장로를 동등으로 보는 미국남장로회의 직분관이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광안련에 의해 1922년 헌법에 반영된다. 광안련, “본장로교회 신헌법,” 『신학지남』 제7호(1919.10), 89.
- 25**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감리교회와 연합사업을 벌였으며 교회의 통계에서도 권사의 수를 집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여성들에게도 안수집사와 비슷한 성격을 부여한 감리교회의 권사 제도를 1955년 제40회 총회에 도입하기에 이른다. 김순권, 『총회 회의록 제79회』(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15, 127.
- 26** 1901년의 첫 공의회는 선교사 대표25명, 한국인 장로 3명, 조사대표 6명이 참석하였다.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23.
- 27**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이교남역 (조선야소교서회, 1918), 20
- 28**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21.
- 29**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171.

장로교회(長老教會)에 사종(四種)의 회명(會名)이 잇스(有)니 1은 당회(堂會)니 츠(此)는 혼 지회(支會)를 치리(治理) 혼 목스(牧師)와 장로(長老) 회집(會集) 혼 것시오. 2는 로회(老會)니 여러 당회가 파송 혼 목스와 장로가 회집 혼 것시오. 3은 대회(大會)니 모든 로회가 파송 혼 목스가 회집 혼 것시오. 4는 총회(總會)니 각처 로회가 파송 혼 목스와 장로가 회집 혼 것이라. 연즉(然則)당회는 혼 지회(1支會)를 치리 혼고 대회는 속(屬) 혼 로회를 치리 혼고 총회를 속 혼 대회를 치리 혼느니 우리 조선(朝鮮)은 각처에 교회를 설립 혼지 수년에 아직 당회는다 설립되지 못 혼였스나 의론(議論) 혼 스건이 너무 만(太多) 혼 고(故)로 즈금(自今) 위시(호야는 전국지회가 1처(處)에 회집 호야 의론 후대 되므 그(基) 명칭을 조선장로회 공의회 르 혼니 이는 장츄 로회가 설립될 장본(張本)이다. 여(余)는 이회(此會)가 속히 조직되여 장츄 이 나라에 이 네가지(四種)치리회가 완전히 성립되기를 희망 혼노라. 주후 1901년 9월 20일 량뎐백(梁甸伯) 근서(謹書)

제1회 조선장로회 공의회의 회록 서문에 따르면 아직 당회를 설립하지 못했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제대로 조직된 장로교회가 설립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서문은 장로교회의 사종(四種)의 회의를 제시하였다. 특이한 것은 조사와 영수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회록에 기록되어 있다.³⁰ 영어 회록에는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 선정과 공의회 규칙 준비위원선정, 오스트레일리아 미션회의 헌의에 의해 조선자유장로회 설립방침을 정할 위원 선정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조선교회가 선택한 장로의 명단과 신학생을 택하고 그 명단이 영문 회록에 기록되었다. 또 기독교신문이 미국 북장로회미션회의 발행에서 공의회 발행물로 결정되고, 교회에 십부장과 백부장을 택하였다.³¹ 이것은 권찰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1902년 경성 제증원에서 회집한 제2회 공의회는 조사들이 서로 방조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각 교회와 공의회와의 상관되는 문제, 학교와 교회의 상관되는 문제, 교인의 장례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제2회 공의회는 집사대표들도

30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173.

31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25.

참석하였다.³² 제2회 공의회는 조선 주유 장로회 설립방침을 정하였다.

제1도(第1條) 설립방침³³

(1)금후(今後) 하시(何時)에든지 장로1인 이상이 있는 지교회 12처(處)에 임직할 자격이 있는 사(者)가 3인 이사에 달하면 조선 주유 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하겠고 먼저(先次) 고등 치리회로 전국 합의회를 조직할 것이요 대회 혹 총회가 성립되는 날까지는 그 로회만 고등이 될지니라.

또한 제2회 공의회는 선교사중 2/3의 가결로 퇴회하기까지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회록에 기록하고 있다.³⁴

1903년 제3회 공의회는 국한문성경보다는 언문(언문)으로 출판할 것을 결정하였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에 보낸 조선자유장로회 설립에 대한 청원은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4년의 제4회 공의회는 장로회 헌법과 규칙을 차용하였다. 본격적인 직분론이 명시된 것이다.

회원(會員)³⁵

1. 각 장로회 선교스(남자(男子)에만 한함)니라, 그러하는 권징스건과 장로, 집스장립과 목스교육스건에 드는 안수로 임직 못된 자(자)는 투표권이 업슴.
2.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드장로1인식이니 이는 조선어를 용(用)하는 회에 참렬해야 투표권과 기타 일반권리를 행스함.
3. 전기 두 모양 회원 외에 공의회 각 소회에서 파송하는 언권방원이니 이는 투표권이 업스니라.

32 조선공의회 참석 직분자를 보면 제1회는 목사, 의사, 장로, 조사로 구성되었고, 제2회부터는 집사, 교사도 참석하고 있다.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휘집』, 171-201.

33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휘집』, 27.

34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휘집』, 28.

35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휘집』, 33.

그 외에도 장로와 집사를 선택하여 교육하는 세칙은 투표 전에 소회에서 허락을 받고 피선 후에 6개월간 교육하여 안수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사 후보자는 시취하여 양성하고 강도사 목사로 임직할 일에 대해서는 노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각 소회가 목사 장립하는 권세와 양성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신결혼과 불합당한 결혼을 금하고 혼인사 협의위원이 여전하다고 차용하고 있다.³⁶ 또한 조선목사 장립하고자 하는 곳은 2곳이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노회를 설립하든지 본국 로회에 속하여 장립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조선장로교회는 4개의 파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회는 하나의 교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유지할 때에는 선교사의 권고를 받아야 하지만 자유교회설립청원이 가할 때에는 선교사 2/3의 가결로 선교사가 전수 퇴회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 5천부를 작성하고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일부를 역판하였다.³⁷

1905년의 제5회 공의회는 장로를 선택할 때에 2/3 가결로 투표할 것을 정하였다. 또한 13도의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회가 연합공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할 것을 정하였다. ³⁸ 1906년 제6회 공의회는 노회가 조직된 후에는 조선어 공의회는 폐지되고 노회 총대원은 목사, 장로로만 허락하는 것과 언권과 투표권이 있음을 결정하였다.³⁹

4. 조선독노회의 직분론 규정(1907-1911)

지금까지 공의회 이전과 공의회 시대의 정치와 직분론의 규정들을 회의록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흐름은 선교사에서 현지 대리인으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4개 장로교회 선교부로, 남성사역자에서 남성과 여성사역자로, 서리직분에서 정규직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제6회 공의회 의 결정과 같이 분파 없는 하나의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조직되었다. 그

36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35.

37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37.

38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39.

39 광안련, 『장로교회스년회집』, 43.

의미는 한국인 목사의 장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어 공의회는 폐지되어 조선 독노회가 되고, 고등회, 즉, 영어로 진행된 선교사들의 영어 공의회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고등회는 연합 선교사들의 관계되는 사건들만 취급하고 명칭은 장로회 미션 합중회가 된다.⁴⁰

1907년 조선 독노회는 서경조를 비롯한 7인의 목사로 장립하고 신경과 소요리문답을 조선교회의 헌법으로 1년간 임시 채용하였다. 직분론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향존직원에 있어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의회 이전의 미국북장로교회의 규칙은 목사, 장로, 집사로 규정하였다면, 독노회의 교회 직원론에서는 3종이 아닌 장로와 집사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3조 교회 직원론⁴¹

1907년 규칙(規則) 제3조(第3條) 1,2절은 여좌(如左)함.

1. 직원(職員)은 두 가지(2종)이니 장로와 집사라.
2. 장로는 두 가지(2種)이니 강도(講道)와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흔히 목사(牧師)라 칭(稱)하고 다만(但) 치리만 하는 자(者)를 장로(長老)라 하니 이는 성찬(聖饌)에 참례(參禮)하는 남자(男子)라야 되나니라.

한편 조선 독노회는 장로 공의회 보고서에서 직원과 직분을 표기하기를 목사, 조사, 매서원, 여전도인, 장로로 구성하고 있다.⁴² 그러나 1908년 제2회 독노회에서는 목사, 장로, 조사, 남전도인, 여전도인, 매서인, 의원, 장립집사로 구성된다. 장로의 순서가 조사 앞, 목사 다음으로 조정되고, 장립집사가 등장하고 있다. 1910년 제4회 독노회에서의 총계표를 보면 목사, 강도사, 장로, 조사, 남전도인, 여전도인, 매서인, 장립집사로 강도사가 추가되었다. 특별히 1910년 제4회 독노회의 교회통계는 각 교회가 대리회에 보고하는 양식과 조선노회의 총계가 다르며, 직분의 항목이 다르다. 각 교회에서 대리회에 보고하는 양식은

40 곽안련, 『장로교회스년휘집』, 44.

41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경성:예수교서회, 1913), 32.

42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 42-43.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조선노회의 총계는 헌법과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각 교회에서 보고하는 별지 양식에는 ‘영수가 몇사람이나’, ‘여권사가 몇 사람이나’가 나오고 있다.⁴³ 서리제도 가운데 하나인 영수제도는 1912년 총회의 기록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감리교회와의 연합운동의 영향으로 장로교회에 감리교회 권사가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독노회의 정치에 있어 직원의 규정을 보면 미국 남장로교회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통계표에서는 전례대로 미국 북장로교회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회 통계에서는 영수와 서리집사의 항목을 제외한 반면 대리회 통계에서는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분론 규정(1912)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록을 살펴보면 한국장로교회의 직분론의 실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몇가지 자료가 있다. 먼저 전도국의 제주교회 보고를 보면 통계표에 영수항목이 남아 있다.⁴⁴ 또한 경기충청노회 보고서에 의하면 “남녀조사를 더 세워 전도를 더욱 힘쓰며”라고 장래사건을 보고하고 있다.⁴⁵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회 총회는 정치개정을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1907년의 간단하게 작성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오랜 시간을 거친다. 그리고 마침내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최초의 헌법이 발간된다. 지난한 헌법개정작업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1919년 제8회 총회로 삼일만세운동으로 위원들이 체포되었고, 광안련이 번역한 존 하지의 책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참고서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⁴⁶

6.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의 직분론 규정(1917)

43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 24-27.

44 한석진,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록』, 15.

45 한석진,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록』, 44.

46 제8회 총회록(1919), 40.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를 근간으로 해석한 것으로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지금도 현대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의 책은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를 비롯해서 1907년 조선독노회에서 세칙으로 채택되었으며 1922년 헌법의 목차 역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교회정치문답조례의 직분론을 살펴보면

첫째, 목사직에 대한 문답을 보면,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속할 직분에 대한 55문에 대해 목사, 장로, 집사의 3종을 밝히고 있다.⁴⁷ 또한 예수교회 중 가장 귀한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제 59문에서 교회에 최고로 귀한 직분은 목사니 성경에 그 이름과 직분과 권한과 자격과 상 받을 것을 가르쳐 말하였으니 라고 답하고 있다.⁴⁸ 또한 하지는 목사의 명칭을 위임목사, 전임목사, 임시목사, 동사무사, 원로목사, 지방목사, 부목사, 무임목사, 이명목사, 피택목사, 전도목사, 선교목사, 관립목사, 임시순행목사, 퇴로목사를 열거하고 있다.⁴⁹

둘째, 장로에 대해서는 제85문에서 치리장로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답하기를 치리장로라 하는 것은 목사로 더불어 본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성찬에 참여하는 무흠한 남자로 본교회 교인들이 투표하여 선정하느니라고 말한다.⁵⁰ 또한 제87문과 88문에서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분간되느냐의 문제와 답하기를 목사와 치리장로가 분간이 있으니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아니하니라,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하니 장로는 당회관리하에 있고 목사는 노회관하에 있느니라, 목사를 장립할 때에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고 장로는 성찬과 세례를 베풀지 못하느니라. 미국 남장로회에서는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도 안수하느니라. 88문에서는 명칭과 직분에 대하여 분간이 있으니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라 칭하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도 칭하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만 칭하며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일할 수 있으나 세례 성찬과 와 다른 일에

47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이교남역 (한국기독교 교회사 주영연구소, 2021), 88.

48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90.

49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93-99.

50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100.

자의로 진행치 못하느니라라고 말한다.⁵¹

셋째, 집사에 대하여 103문은 장립집사는 무엇이뇨라고 묻고 답하기를 집사라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또 있는 직분이니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 속한 일체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빈핍 곤란한 교인을 살펴 구제하는 일을 주관하고 재정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니라라고 답한다.⁵²

당시에 장로교회의 헌법에 대한 지침서로서 하지의 책을 필적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이 정치문답을 세칙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하지의 정치문답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한국교회의 선교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서리직분과 여성직분에 대해서 선교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⁵³, 심지어 타교단의 상황까지도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의 분간에 대해서는 찰스 하지의 해석을 충분할 정도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침서와 실제 헌법의 상이성은 오늘날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현장에서도 개념과 적용의 충돌 현상을 보이고 있어 헌법과 현장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고의 헌법사를 살피고, 우리가 믿는 성경과 신경과 헌법을 일치시키는 또 다른 작업이 요청된다.

7. 1922년 헌법의 직분론 규정(1922)

1922년의 헌법은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의 목차를 따르고 있지만 직분론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아닌 미국 남장로교회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꺾안련은 자신이 소속된 미국 북장로교회와, 자신이 번역한 하지의 책과는 달리 항존직원을 둘로 보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입장에 선다.⁵⁴ 하지는 장로를 가리키는

51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101-102.

52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110.

53 한국장로교회 직분론은 찰스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교단의 참고서를 결의하였으나 찰스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 매이지 않고 선교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직분론을 전개하였다. 가령 서리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여성들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 24-27.

두 용어인 Presbyter과 Elder를 구분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가장 최상 항존직이라고 하면서 Elder는 평신도로서 교인의 대표자이며,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할 권리가 없고, 노회 개회 성수 시 목사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1922년 헌법에는 하지의 문답조례는 보이지 않는다. 목사와 선교사의 안수에서 안수에 참여하는 사람을 목사의 안수가 아닌 노회의 안수함으로 규정하고 노회의 개회도 목사 3인과 장로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안련은 자신의 ‘목회학’에서 목사의 자격을 일컬어 디모데전서 3장과 한국장로교 헌법을 인용하기를 27세 된 남자로서 세례받은 후 5년 이상 그리고 무흠한 자라고 말하고⁵⁶ 목사의 임기는 평생이며, 3,4,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옳지 않고 매 5년마다 신임을 묻는 것도 목사직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⁵⁷

또한 1922년 헌법에는 목사의 명칭에 부목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부목사는 유안건이 되었다가 1955년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⁵⁸ 1922년 헌법 목사임기에 대한 헌의안이 있었으나 기각되었고, 장로의 명칭이 치리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⁵⁹

한편 서리직분에 대해서 1922년 헌법은 서리집사와 조사, 영수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으나 항존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직분에 대해서는 여 집사를 규정하면서 투표가 아닌 자백 선정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장로의 집사의 임기를 말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들은 종신항존직이라고 하면서도 시무기한과 반차를 정할 수 있는데 기한은 3개년으로 하고 반차의 경우 시무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치리의 직무는 없으나 그 직은 항존하고 노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⁰

이상으로 살펴본 1922년 헌법은 1907년의 간략한 헌법을 규격을 갖춘 헌법

54 광안련, “본장로교회 신헌법,” 『신학지남』 제7호(1919.10).89.

55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41.

56 광안련,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5), 16.

57 광안련, 『목회학』, 31.

58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44.

59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44-45.

60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47-49.

으로 완성하였으며, 그 틀은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콰안련은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의 헌법상의 상이성을 극복하였지만 목사의 권위에 대해 혼합적인 입장에 서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직분의 엄중함을 헌법의 규정으로 구현하는데는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8. 1929년 헌법의 직분론 규정(1929)

1929년 헌법은 1927년 제16회 총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자는 청원에 받아 콰안련이 포함된 헌법수정위원 16인을 선정하고 제17회 총회에서 수의한 결과 3개항이 부결되고 나머지는 통과 되었다.⁶¹ 1929년 수정헌법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는

첫째, 준직원과 임시직원이 신설된 것이다. 즉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하는 직원으로 전도사 전도인, 영수, 남녀서리집사가 포함되고 준직원엔 강도사, 후보생이 교회직원엔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1929년의 수정헌법은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헌법안에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당회의 허락으로 여 전도인에게 강도권을 주는 것이 통과되었다.⁶²

둘째, 목사의 명칭에서 변화가 있었다. 전임목사, 피택목사, 이명목사가 없어지고, 원로목사, 공로목사가 생겨났으며, 목사가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 교수와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겨났다.

셋째, 목사직에는 연령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장로의 자격에는 연령과 무흠규정이 신설되어 27세 이상의 남자 중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딴전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노회의 구성도 목사 3인과 장로 3인으로 총대 수가 동일하게 조정되었다.⁶³

9. 1934년 헌법의 직분론 규정(1934)

61 제17회 총회록(1928), 31-32.

62 제18회 총회록(1929), 44.

63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58.

1934년의 헌법개정은 신경과, 요리문답에 대한 개정으로 인도장로교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것을 번역한 개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34년 헌법의 개정은 1932년 제21회 총회에서 곽안련이 청원하여 특별위원 16인을 조직하였고 제22회 총회인 1933년에 완료치 못하고 다만 출판할 권리까지 허락을 받아 1934년에 출간하게 된다.⁶⁴

이후의 직분론과 관련된 현의안은 장로가 총회장은 되나 당회장이 못되는 이유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수 있고, 안수 급 축복기도를 장로가 못하는 것은 성경 중 사도의 행한 것으로 목사가 그 특권을 전수하여 금일까지 거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교회의 항존직을 두 가지로 설명한 미국 남장로교회의 노선을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자장로를 세우자는 것에 대한 현의안들이 있었으나 기각되었고, 목사의 시무연한을 청원하였으나 별다른 규칙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로 부결되었다.⁶⁵

IV.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 분석

이상으로 한국장로교회 선교초기의 교회정치 가운데 직분론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891년의 미국 북장로회교회 선교부의 규범과 세칙에서 1934년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직분론의 변천은 이미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를 구성하는 정치와 직분의 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직분체계는 한국교회의 목회현장과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공의회 회의록과 독노회, 총회 회의록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직분론을 몇가지로 살펴보면

64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59.

65 제22회 총회록(1933), 65.

1. 초기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북장로교회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1891년에 대한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선교본부에 초청하여 아시아 선교에 대한 이해를 얻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25년간 설교한 존 네비우스 박사를 초청하여 선교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네비우스는 자진전도, 자주치리, 재정독립의 원칙을 가르친다. 마포삼열은 네비우스로부터 사경회 제도와 재정독립의 원리를 배웠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⁶ 그러한 네비우스의 경험전수는 즉시 ‘북장로교 선교회 규범과 세칙’에 반영되었다. 네비우스 원리의 자진, 자치, 자립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영수’제도라 할 수 있다. 현지 대리인의 첫 번째 직분으로 영수가 등장하고 있다. 영수는 서리제도로써 장로가 피선되기 전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교회개혁에 있어 조사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네비우스의 원리 몇가지를 살펴보면

- (1) 성경연구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 (2) 선교지역을 피차 합의하여 분할해서 전도한다.
- (3) 자립선교, 곧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교사가 된다.
- (4) 자립보급, 모든 교회 건물은 교인들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조직되면 전도인의 봉급을 자립적으로 지급한다.
- (5) 모든 종교서적은 외국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순 한국말로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선교초기의 주도권을 가졌던 미국 북장로교회는 네비우스선교원리를 도입하여 폭넓은 서리제도를 도입하였다.

2.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와 콕안련의 영향을 받았다.

66 콕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98.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지만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는 일에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눌서와 같은 남장로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하였고, 이들이 정착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언더우드의 경향을 궤안련도 이어받아 독노회와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와 1922년, 1929년, 1934년 헌법으로 개정할 때 미국 남장로교회의 직분론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궤안련은 찰스 하지의 『교회정치조례문답』을 번역하여 출간하고, 독노회가 이것을 세칙과 헌법의 참고서로 결의하고도 직분론의 대원칙은 하지의 ‘교회정치조례문답’을 가져오기 보다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원리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항존직을 3종으로 보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하지의 ‘교회정치조례문답’을 따르지 않고 2종으로 보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직분론을 가져오므로써 목사직에 대한 이해를 첫 도입부에서부터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궤안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지남」에 자신의 변을 기고하면서 항존직원은 감독과 집사라고 언급하고 있다.⁶⁷ 또한 궤안련은 목사의 안수문제와 노회의 성수문제, 장로가 평신도로서 교인의 대표자이나, 교인에 의해 선출된 장로냐의 문제등에서 모두 미국 남장로교회의 편에 서게 된다.

3. 미국 북장로교회가 타 장로교회의 선교부를 포괄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 한국장로교회 형성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북장로교회는 가장 먼저 선교부를 설치하고 이어 도착하는 호주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를 수용하고 양해하는 정책을 펼쳤다. 가령, “교계예양협정”에서도 경쟁구도보다는 양해를 선택했다. 선교사 공의회외의 경우도, 매년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에서 번갈아가며 공의회 회장을 피선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포괄정책이 직분론을 결정하는 헌법개정에서도 동일한 정신과 흐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7 궤안련, “본장로교회신헌법,” 「신학지남」 제7호(1919.10), 89.

조선예수교장로회 고등회 직원록⁶⁸

- | | |
|--------------------|---------------------|
| 1. 영어공의회 | 2. 조선어공의회 |
| <u>1893-이눌서(남)</u> | <u>1901-소안론(북)</u> |
| <u>1894-배위량(북)</u> | <u>1902-이눌서(남)</u> |
| <u>1895-전위염(남)</u> | <u>1903-구예선(개)</u> |
| <u>1896-이길함(북)</u> | <u>1904-왕길지(호)</u> |
| <u>1897-최의덕(남)</u> | <u>1905-마포삼열(북)</u> |
| <u>1898-부두일(개)</u> | <u>1906-배유지(남)</u> |
| <u>1899-원두우(북)</u> | |
| <u>1988-오원(남)</u> | |

이런 포용, 포괄정책이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초기 직분론에서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장로교회의 혼합물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⁶⁹

4.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사역에서 영향을 받았다.

조선독노회 회록을 보면 교회현황보고에서 1907년 제1회 독노회록에서 여전도인, 매서인이 등장하고 1910년 제4회 회록에서는 감리교회의 직분제도인 권사를 현황보고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⁷⁰ 그리고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권사제도가 도입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회록⁷¹

6. 평북 노회장 김용진씨와 경남 노회장 노진현씨가 헌의한 여권사 제도설치에 대한 그 자격 및 선거, 권한, 대우등에 대한 청원건은 자격은 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년조가 깊고 교회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

68 조선예수교장로회 고등회의 직원론을 보면 각국 장로교선교부를 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안련, 『장로교회수년회집』, 9.

69 성회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43.

70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경성:예수교서회, 1913), 24.

71 제40회 총회록(1955), 366.

사 선거방법에 의하여 권한은 제직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규정함이 가할 줄 아오며,

선교초기부터 감리교회와 동경선교문제로부터, 장감찬송가 발행, 교계신문 발행등에서 연합사업을 할 때 교파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던 분위기는 결국 직분론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문제는 직분론의 하나의 일관된 교회론, 즉 직분론의 원칙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5. 교회가 성장하고 체계화된 후에도 서리제도를 정리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부터 서리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초기 선교전략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직분론의 혼선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복음전도와 교회조직이 무르익은 후에도 서리제도는 계속 존속하거나 변형되어 자리잡았다. 영수제도는 원로, 공로, 명예직분제도로 변형되고, 조사제도는 교육전도사로, 서리집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초기 제대로된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직분 세우기를 엄격하게 하려던 의도는 사라지고 직분의 엄중함보다는 직분을 목회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형편이 되었다. 또한 각 직분의 권한과 직분의 기한에 대해서도 개혁교회의 직분관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가령 장로의 경우 매 3년마다 시무를 묻도록 되었으나 자율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제42회 총회의록

1. 평양노회장 계창주씨와 경기노회장 유호준씨와 경안노회장 김성역씨와 순천노회장 김순배씨, 진주노회장 김석진씨의 현의한 정치 제4장 16조 4항 장로의 임기중 3년 1차씩 시무를 투표하고를 3년 1차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은 노회에 수의할 일이며

목사의 시무연한도 종신직 문구를 “70세 정년까지”로 각각 수정하였고,⁷²

⁷²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 시무할 것이니라” 정치 제4장 4조 1항은 고신은 1972년에, 기장은 1975년에 합동은 1991년(제76회 총회)에서 “70세 정년까지로 수정한다.

장로는 27세에서 1955년에 만 30세로 변경되고 정년이 신설됨에 따라 은퇴직분이 생겨났다.

6. 목사직에 대한 이해와 진술이 현장의 이해와 상이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국장로교 보수교단은 목사안수시 장로회원이 목사의 안수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에 장로총대가 회장직을 맡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찰스 하지의 ‘교회정치조례문답’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직분의 규정과 원리에 대한 헌법적인 규범은 이런 교회현장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서도 다룬 것처럼 미국 북장로교회의 직분론과 미국 남장로교회의 직분론이 혼합된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향존직을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목사직의 우월한 직분적 성격을 잘 드러낸 미국 북장로교회의 3종의 향존직 규범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목사에 대한 제도가 목사직에 대한 왜곡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부목사는 동사목사로서 존속되어 왔으나 후에 직분을 정과 부로 나누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부목사는 제6회 총회(1917)에 유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부목사라는 명칭의 문제에 논란이 있어 보류되었다가 1955년에 동사목사가 사라지면서 부목사 호칭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현행 부목사와 동사목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개념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다.

V. 한국장로교회 직분론에 대한 제안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의 변천사를 논한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일이다. 다만 직분론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것도 과중한 일이어서 1891년부터 1934년 헌법개정까지를 다루었다. 미국북장로교회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원칙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조를 선택할 때 인도장로교회의 12신조를 가져오는 것이나 4개의 분파가 있는 장로교회를 분파

없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구상한 것은 연합을 위하여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의 장로교회라는 틀을 고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장로교회가 많은 교단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첫 노회와 첫 총회가 하나의 장로교회라는 역사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리직분의 과도한 활용은 직분론의 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곽안련이 찰스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수용하기보다 미국 남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수용한 것은 매우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으로 지금도 헌법의 규정과 교회의 현장의 이해는 상이점을 상존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역사속에서 결정되고 형성되어온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가진다면 더 성경적이고, 개혁신학과 장로교회 표준문서의 원리와 현장의 직분론에 대한 상이점이 해소되는 좋은 헌법개정이 앞으로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국장로교회의 각 교단의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몇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향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의 3종으로 설명하고, 목사직과 장로직의 직분의 성격과 차이점을 분명히 서술한다.
2. 서리제도, 원로제도, 명예제도를 정비한다.
3. 여성사역자에 대한 사역의 범위와 권한에 대하여 기술한다.
4. 부목사와 동사목사의 직분충돌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다
5. 헌법에 없는 증경이라 불리는 직함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VI. 나오면서

교회의 원리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개정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지계석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매년 총회에는 수 많은 헌법개정 헌의안이 올라온다. 대부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의안들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매우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신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분론은 교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최근 여성군목제도에 대한 헌의안이나, 여성안수와 같은 헌의안은 교단의 정체성에 허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개정 역사를 살피고,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을 보장하는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면서 오늘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교회를 수호하면서도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헌법, 규칙서

STENDING RULES and BY-LAWS of the KOREA MISSION, 1891.

STENDING RULES and BY-LAWS of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1901.

곽안련.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경성: 대동인쇄주식회사, 1922.

_____.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부산: 대한기독교서회, 1934.

안용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66.

박성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71.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1894.

Annu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1899.

선교사 공의회 회록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h-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Pyengyang, 1901. Printed
Yokohama, Japan.

MINUTES AND REPORT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Pyeng Yang, 1903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ie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Pyeng Yang, 1904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h-second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Seoul, 1906. Printed

Yokohama, Japen.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h-Third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Pyeng Yang, 1907.
MINUTES AND REPORTS of the Twenth-Fif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held at Fusan, 1909. Printed
Yokohama, Japen.

독노회 회록

한석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록』. 경성:예수교서회, 1912.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

한석진.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록』. 경성:예수교서회, 1913.

2차 자료

곽안련. 『장로교회스던휘집』. 이교남역. 조선야소교서회, 1918.

_____.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_____.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5.

김광수. 『한국기독교 수난사』. 서울:기독교문사, 1978.

_____. 『한국기독교 성장사』. 서울:기독교문사, 1976.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서울:생명의 양식, 202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출판사, 1982.

왕길지 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이교남역.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양전백.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 이교남역. 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컨콜디아사, 1978

장선근. 『한국장로교회사』. 부산:복음서관, 1970.

전용복.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 일치운동』. 서울:성광문화사, 1980.

찰스 하지. 『교회정치문답조례』. 이교남역. 한국기독교 교회사 주영연구소, 2021.

-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최재건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황재범 외.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성립과정 및 신학』. 서울:한들출판사, 2010.
- _____. 『일제 강점기 한국장로교회사』.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Early Office Doctrine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Jong Gu Lim

(Dae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Office Doctrine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present lessons and alternatives to the Korean church today. Tracking the Office Doctrine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also related to the order of missionaries' arrival in Korea, which can be divided into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s norms and regulations (1891) to the 1934 Constitutio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as influenced by the Nebius missionary policy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d missionary work in the early days. However, with policies covering missionaries in each country, the theory of Office Doctrine has become complementary rather than consistent, and in particular, the field and the constitution have not resolved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statements about pastor positions. The proposal to submit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rough this study should explain the three types of permanent posts: pastor, elder, and deacon, and clearly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pastor and elder log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frost system, senior system, and honor system, and to describe the scope and authority of female ministers. Kwak An-ryeon, who was involved in the 1922 Constitution, did not follow Charles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 and introduced the constitution of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failing to resolve the difference from the constitution that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had already applied to the field. In this regard, analysis and reflection should be conducted at the tim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Constitution.

Key Word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fice Doctrine, C. A. Clark, Charles Haji,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